

T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- 목 차 -

1. 윤리규범 방침
2. 윤리규범 규정
3. 시스템 구축
4. 내부신고자 규정
5. 윤리경영 교육

- 제 · 개정 이력 -

제 · 개정 번호	제 · 개정일	제 · 개정 사유
1	2022.07.01	최초 제정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1. 윤리규범 방침

가. 개요

1. 목적

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(주)티벨의 투명성·신뢰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,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범위

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(주)티벨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또한 (주)티벨과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,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·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.

3. 원칙

- 1)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.
- 2)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,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.
- 3)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, 향응,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.
- 4)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- 5)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,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.
- 6) 회사는 실적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/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.

4. 고객에 대한 윤리

- 1)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2)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.
- 3)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5. 공정거래에 관한 윤리

- 1)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- 2) 거래처,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. 또한 거래처,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.

6.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

- 1)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.
- 2)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, 인권 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.
- 3)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2. 윤리규범 규정

제 1장 윤리경영 원칙

제1조(건전한 기업문화 조성)

- ①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.
- ③ 임직원간 성적 괴롭힘·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④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,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.

제2조(차별금지)

- ① 임직원의 인종, 성별, 종교, 신념, 장애,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, 근무평가, 보상,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의 실력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.

제3조(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)

- ① 임직원은 거래처,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, 향응, 선물, 접대,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안 된다.
- ② 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,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윤리 담당자(부서)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③ 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.
- ④ 기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, 횡령·배임 등 부패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제4조(이해상충금지)

-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된다.
- ②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 및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제5조(부정청탁금지)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.

- ① 채용,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
- ②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
- ③ 기타 정당한 거래관습에 반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

제6조(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)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.

제 2장 고객에 대한 윤리

제7조(고객가치제고) (주)티벨의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,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,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
제8조(고객신뢰제고)

- ① 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,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, 불만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제9조(고객이익과 정보보호)

- ① (주)티벨의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②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,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
- ③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- ④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제 3장 공정거래 원칙 준수

제13조(공정거래)

- ① (주)티벨은 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, 『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고, 경영진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를 적극 지원한다.
- ② 임직원은 협력업체나 거래처 등의 경영정보나 지적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한다.
- ④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장 · 거짓광고를 하지 않는다.

제14조(동반성장)

- ① 거래처,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. 또한 거래처,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.

제 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
제15조(환경, 안전의식 함양) ①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, 환경 및 보건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제16조(법규의 준수)

- ①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, 해당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.
- ②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.

제17조(사회공헌활동)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제 5장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내부고발 보호(신고와 보상)

제18조(윤리위반신고)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,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(전담부서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신고자보호) 감사실,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(전담부서)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,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
제20조(보상체계)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 6장 「윤리규범」 및 「윤리경영 세부지침」 점검 및 교육

제21조(윤리경영점검)

- ① (주)티벨 윤리경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, 「윤리규범」 및 「윤리경영 세부지침」의 업무적용 시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 및 감사실장 등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고 협의하며, 주요 사안은 감사실장 및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.
- ② (주)티벨 윤리경영의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윤리규정 이해도를 점검하고 윤리수준의 자가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. 이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제22조(윤리경영 교육)

- ① 본부장 및 실장은 신입직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「윤리규범」 및 「윤리경영 세부지침」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.
- ② 제 1항에 따른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은 「반부패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」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.
- ③ 자회사,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다.
- ④ 윤리규정 위반행위가 발생 시, 이에 대한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3. 시스템 구축

가. 거버넌스 구축

1. 모니터링

(주)티벨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부 보고자료를 작성 및 보관한다. 또한,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및 이행 실적에 대해 확인한다.

- 1) 차별금지
- 2) 임직원의 부패행위(뇌물수수, 청탁, 횡령, 배임 등) 금지
- 3)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
- 4) 환경, 안전, 보건 의식 함양
- 5) 회사/고객의 비밀정보, 내부정보 등 대외비 준수
- 6) 불법적, 비윤리적행위 발생시 보고 의무/내부 고발 보호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4. 내부신고자 규정

가. 개요

1. 목적

이 규정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, 회사는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범위

이 규정은 (주)티벨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3. 기본원칙

(주)티벨은 다음 각 호의 내부신고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) 신변보상: 신고자는 신고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.
- 2) 비밀보장: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되며,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
- 3) 보복행위 금지 :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, '윤리경영 담당 부서'에 즉시 통보하고, 보복 행위자 또는 관련자는 보복행위에 대하여 징계, 처벌을 받는다.

4. 신고처리절차

1) 신고 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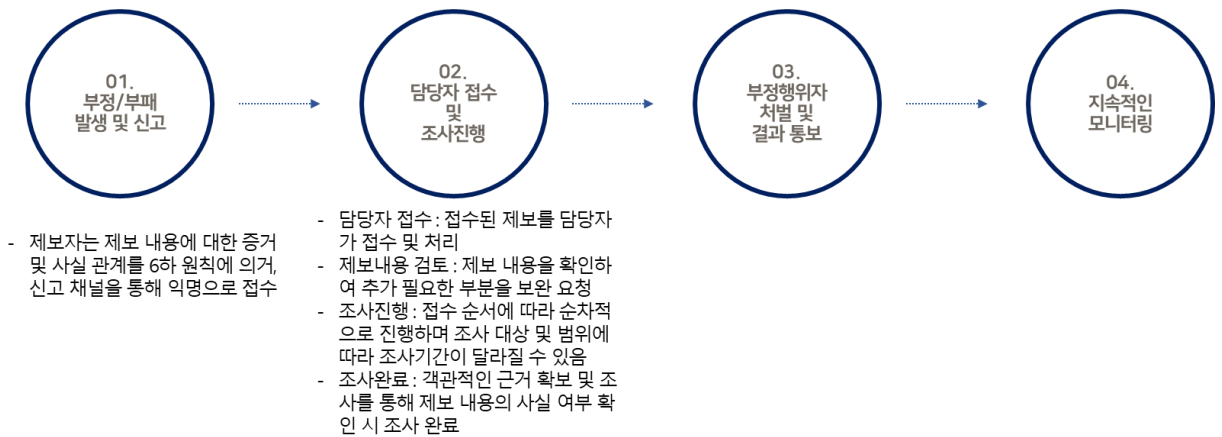
내부신고 시 아래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

[비윤리 신고채널]

- ▶ 부 서 명 : 경영지원팀
- ▶ 신고채널 : <https://open.kakao.com/o/sLEzgTue>
- ▶ 우 편 : (06242)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, 905호 티벨(역삼동, 혜천빌딩)

2) 신고처리절차

제보처리절차



TIBELL	(주)티벨 윤리경영 정책	문서번호	ESG TF-2022-06
	Ethical Management Policy		

5. 윤리경영 교육

가. 개요

1. 윤리경영 교육 목적

윤리경영 교육은 경험부족, 인지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한다. 교육훈련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자와 교육 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한다.

2. 교육훈련 관리

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관리서 및 이수증 발급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